서울특별시은평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212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일반임기제(6급)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인원	근무기간	근무예정부서	담당예정 직무
정비사업 통합민원센터 총괄	임기제 지방행정주사	1명	1년	정비사업 신속추진과	○ 정비사업통합민원센터 업무 총괄 - 정비사업 추진과정의 주요민원 통합관리 및 조정지원 체계 구축 · 사업별·구역별 민원발생 현황, 갈등 쟁점 및 처리 진행 상황 관리 · 갈등 확산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한 선제적 현장 대응 및 중재·조정 지원 - 정비사업 컨설팅, 신속통합기획 공모사업 지원 - 공공재개발 및 모아타운 공모사업 지원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 근무기간 연장은 사업의 계속성, 기간연장의 불가피성, 근무실적 등 종합 고려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제2항에 따라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총 근무기간 5년범위내 연장 가능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371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규칙 제982호)

3. 응시자격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 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삭제 <2022. 1. 4.> 바. 삭제 <2022. 1. 4.>
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해 응시 자격이 정지된 자

○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자격요건
임 기 제 지 방 행 정 주 사 (일반임기제6급)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민간기업 등에서 도시분야(도시계획·건축, 정비, 개발, 재생 등) 실무참여 또는 정책연구 업무경력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5항)

※ 경력 계산시 여러 기관 경력합산 가능 단, 공무원경력과 민간경력 간의 합산은 불가

※ 시간제근무자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기간 인정(주40시간 기준)
(예시 : 2년간 주20시간 시간제 근무경력 → 1년으로 인정)

※ 경력증명서상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4. 보수 수준

○ 연 봉 액 : 57,708천원 ※ 임용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임기제지방행정주사 *6급상당	86,606천원	57,708천원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 희망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응시원서 접수	2026. 12. 4.(금) ~ 12. 8.(화)	방문, 등기우편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2026. 12. 11.(금)	구 홈페이지 공고
면접시험	2026. 12. 15.(화)	시간 및 장소 별도 안내
면접시험 합격자발표	2026. 12. 16.(수)	구 홈페이지 공고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12. 4.(금) ~ 12. 8.(화) 3일간**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접수시 응시번호 문자 개별통보

· **접수 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하며,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는 받지 않음

· 방문접수 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접 수 처 : 은평구청 본관 6층, 행정지원과

· 등기우편 : (03384)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은평구청 행정지원과 인사혁신팀 채용담당

· 방문접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은평구청 본관 6층 행정지원과 인사혁신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은평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등기우편 접수에 따른 은평구 수입증지 미첨부시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우체국 통상환증서 (소액환, 우체국에서 판매, 7,000원)을 구입하여 동봉(정부수입인지 불인정)

○ 시험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1회 이상 재공고하며, 재공고를 통한 추가접수 후 2차 면접대상자 최종 결정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평정요소 :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정요소별 상, 중, 하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 면접점수 공개 : 면접 응시자가 요청한 경우, 본인의 종합 평균 점수 공개

○ 합격자 발표: 구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사항)

- **응시원서 1부(첨부 1)**
  - 응시수수료 : 은평구 수입증지 7,000원(6급)
  - ※ 은평구 수입증지 판매 : 은평구청 2층 재무과
  -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인 이상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는 응시 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 등기우편 접수시(은평구 수입증지 미첨부시) : 응시분야 직급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소액환)을 우체국에서 구입·동봉(정부수입증지 불가)
- **이력서 1부(첨부 2)**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 1부(첨부 3)**
- **직무수행계획서 1부(첨부 4)**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첨부 5)**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첨부 6)**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첨부 7) 또는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학위증서(석사 이상)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 사본 제출 가능 (단, 최종합격 시 원본(대조 확인용) 제출 필요)**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첨부 8) 추가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빙자료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인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폐업기관의 경우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국세청 홈택스 발급가능),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류* ①, ②모두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중 1개 선택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1부(첨부 8)**
- **관련분야 자격(면허)증 증빙자료**
-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증자료는 사본 제출을 허용하고,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 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법 제50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지급정지)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재채용시 해당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구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은평구 행정지원과 인사혁신팀 담당(☎ 02-351-6162)
  - (직무내용 관련 문의) 은평구 정비사업신속추진과 정비사업기획팀 담당(☎ 02-351-7452)